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. 4. 8 선고 2019가단872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, C

피 고 D

판결 선고 2020. 4. 8

주 문

1. 피고는 소외 E에게 전남 보성군 F 대 1689㎡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92. 9. 22. 접수 제75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 서봉조

별지